

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10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 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. 2. 29일 개정됨에 따라 「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」의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제1조 중 “지방재정법 제16조의2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제5항 및 제6항”으로 함.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관계부처 승인 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생략
- 마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재정법 제16조의2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5항 및 제6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재정법 제16조의2</u>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지방재정법</u>」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

- 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.
-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